노동부의 지정전문기관 제도 개선 기본 방침

- 산업보건 서비스 기관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

노동부는 2004년 2월 안전·보건 지정전문기관 제도를 시장경쟁 원리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전문기관으로 전환한다는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2005년부터 시행코자 현재 관계 법규 및 규정 등의 제·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ㅇ노동부는 현재와 같은 지정전문기관에 대한 인력·시설·장비 중심의 지도 감독 방법으로는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전제하에 앞으로의 지도·감독 방법은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안전·보건 서비스의 결과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

ㅇ지정 전문기관의 관계 규정 위반시 처벌 기준에 소정 기간의 업무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설정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정전문기관의 업무정지에 따른 서비스의 중단 사례 방지

ㅇ불요불급한 규제완화와 정부 간섭의 최소화 차원에서 지정전문기관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현행의 지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신규 기관의 진입을 용이하게 유도

ㅇ현재 노동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서비스 수수료는 모두 자율화하여 사업주와 전문기관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보건 대행 수수료 등의 상한가 개념을 폐지

ㅇ지정전문기관에 대한 법정 인력·시설 장비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인증제에 갈음되는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하고 우수한 기관은 관보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노·사 당사자가 전문기관을 선정할 때 참고토록 함

ㅇ사업주의 지정전문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 노동관서별 지정전문기관의 수 제한을 완화

노동부의 이와 같은 기본 방침은 앞으로 보건관리대행, 작업환경측정 그리고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 적용될 것이므로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는 차제에 이러한 산업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정전문기관의 입장에서 현행의 산업보건 서비스 체계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안과제를 도출하는 동시에 발전방안을 모색코자 2004년 6월 30일 COEX에서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보건관리대행기관협의회·작업환경측정기간협의회의 후원하에 "산업보건 전문기관의 서비스 체계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월간 '산업보건'은 동 세미나에서 발표된 연제를 특집으로 게재하여 노동부의 지정전문기관제도 개선방향이 우리 산업보건 전문기관에 위기가 아닌 "기회"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정리 : 대한산업보건협회 이경남〉